

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96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, 서울 관광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.
- 나.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울관광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1) 사 무 명 : 서울관광재단 출연금
- 2) 추진근거
 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 -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- 3) 필 요 성 : 서울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관광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, 국내외 관광홍보

및 마케팅 사업, 관광콘텐츠 확충 및 관광객 편의개선 등
사업수행을 위해 출연 필요

4) 사무내용

-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
- 국내·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
- 기업회의, 인센티브관광, 국제회의, 전시회 등 육성 지원
-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
-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
- 관광시장 조사·연구·컨설팅 및 정보 제공
- 관광기업 육성 및 지원 등

나. 서울관광재단 기관 개요

- 1) 소재지 :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
- 2) 규모 : 전용 1,669 m^2 (8~9층 임대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
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
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
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조치사항 : 2020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김형희(☎2133 -2810)